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140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 및 「동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계획」 추진 등 불용의약품 수거처리사업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장소에 “동 주민센터”를 추가 (안 제5조제2항)

나. 구민, 약국 및 약사회를 수행의무자에서 협조자로 변경

(안 제5조제1항제2항, 제6조제1항제2항)

다. 폐의약품 운반 및 처리 담당부서를 명시(안 제6조제3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(참조: 의약과, 주소: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(무학동), 문의전화: 02-3396-6412, FAX: 02-3396-8912, 메일: [ujung@junggu.seoul.kr](mailto:ujung@junggu.seoul.kr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붙임 1. 「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최소화하여야 한다”를 “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약국 또는 구 보건소”를 “약국,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”로,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협조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”를 “수거에 협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관한다”를 “보관에 협조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구청 폐기물관리부서(청소행정과)에서는 약사회, 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집·운반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<u>최소화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<u>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</u>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<u>최소화</u> <u>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약국, 구 보건소</u> <u>및 동 주민센터</u>----- ----- <u>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불용의약품의 수집·운반·처리)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,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<u>보관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</u> 수집된 폐의약품을</p>	<p>제6조(불용의약품의 수집·운반·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거에 협조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관에 협조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청 폐기물관리부서(청소행</u></p>

소각하여야 한다.

정과)에서는 약사회, 구 보건소  
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집·운반  
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 
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  
다.